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63
----------	-----

제출년월일 : 1997. 4.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1. 제 안 이 유

지방재정법 제110조(기금의운용등) 제3항, 제4항에 배치

2. 주 요 골 자

결산시기를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에서 “출납폐쇄후 3월이내
에”로 변경

시장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를 “제출”
로 변경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 중개정조례안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중 “다음회계연도 3월말까지”를 “출납폐쇄 후 3월이내에”로
하고 제2항중 시의회에 “보고”를 시의회에 “제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사	유
제7조(결산및보고) ①기금운용관은--- 다음회계년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7조(결산및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시장에게----	제7조(결산및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시장에게----	제7조(결산및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시장에게----	지방재정법 제110조(기금 의운용등) 제3항,제4항 에 배치	
② 시장은----- 시의회에 보고하여야한다.	② 시장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시장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한다.	② 시장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한다.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제63조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입
3. 기타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시장은 법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금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용도) 이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58조에서 규정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파주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건설도시국장
2. 기금출납원 : 방재계장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결산 및 보고) ①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회계년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
야한다.

② 시장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따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權의 전부 또는 일부를 免除하거나 당해 地方自治團體에 不利하게 效力을 變更할 수 없다.

第108條 (管理의 방법등) ①債權의 管理에 관한 事務는 債權의 發生원인 또는 내용에 따라 地方自治團體의 이익에 가장 적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은 그 소관에 속하는 債權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債務者・債權金額 및 履行期限 기타 관련되는 모든 사실을 확인하여 帳簿에 기재하고, 그 管理의 徹底를 기하여야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債務의 管理에 관하여도 이를 準用한다.

第4節 公共施設 및 基金

第109條 (公共施設의 設置 및 管理) ①地方自治法 第135條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가 公共施設을 設置함에 있어서 그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國庫에서 補助받아야 할 公共施設에 관한 條例는 內務部長官의 승인을 거쳐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內務部長官은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승인에 앞서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②地方自治團體는 公共施設의 효율적인 管理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의 者에게 委託하여 그 公共施設을 管理하게 할 수 있다.

第110條 (基金의 運用등) ①地方自治法 第13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하는 基金은 條例로 정하는 특별한 目的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運用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을 目的으로 하는 基金의 경우에는 그 基金의 造成을 위하여 地方債를 발행할 수 있다. <新設 91.12.31>

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會計年度마다 基金運用計劃을 수립하여야 하며, 出納閉鎖後 3月 이내에 基金의 決算報告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運用計劃書와 基金決算報告書를 每 會計年度마다 각각 歲入・歲出豫算案 또는 決算書와 함께 地方議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1.12.31>

⑤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基金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公務員에게 위임하거나 地方自治團體의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委託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者의 책임에 관하여는 第

(후 56)

정직한 도정 잘사는 새경기
경 기 도

441-701수원시 권선구 매산로3가1 /전화 (0331)249-2871 /전송 249 - 2139 /담당 : 김봉수

문서번호 법무 11250 - 1677

시행일자 1996. 11. 7 (년)

받 음 받는곳참조

참 조 기획(감사)실장

선결	김광민	지	
집	일자	시	
	시간	결	
수	번호	재	
	2/115	공	제 장
처리과		람	
담당자	박승원		

방재계 통보

제 목 재해대책기금조례제정표준(안) 정정통보

1. 도 건설 13900-1763('96. 7. 24)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시달된 재해대책기금조례제정표준(안)중 제7조(결산 및 보고)의 일부 조항이 지방재정법 제110조(기금의 운용등)제3항, 제4항에 배치되어 다음과 같이 정정통보 하오니 시군에서는 조례제정 입안시 유의하여 착오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준 안 (당 초)	표 준 안 (변 경)
제7조(결산및보고)①기금운용관은 -----	제7조(결산및보고)①기금운용관은 -----
다음회계년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시장에게-----
②시장은 -----	②시장은 -----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 기 도 지 사

받는곳 : 러

법무담당관 전결